

무역기술장벽(TBT) 뛰어넘기

- WTO 분쟁해결 중심

정기대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kdchung@posri.re.kr)

목차

1. 무역규제와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2.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
3. WTO 분쟁해결과 대응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 등을 통한 무역규제는 강화 중
 - 지난 20년간 자유무역주의 확산으로 FTA가 급증하였으나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영향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강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 제한조치 증가
- WTO 회원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WTO 소송 제기
 -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해당사자 간 양자 및 다자 간 협의로 합의 도출 추진
 - WTO 소송 제기의 분쟁해결 목표는 회원국 간 교역상 이해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
 - 승소국은 패소국에 문제 조치의 조정 내지 철폐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패소국이 미이행 시 합법적인 무역보복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
-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절차는 정보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대응 등 4단계로 구분
 - 정보수집 : 해외기술규제정보(TBT 통보문 등), 실제 산업별 기술규제사례 수집
 - 조사분석 : WTO TBT가 야기하는 산업별 피해 원인과 규모 파악
 - 전략수립 : 규제국가별 대응전략, 업종별 대응전략 수립
 - 대응 : WTO 제소 외에도 TBT 위원회 활동, 다자협약,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 철강산업도 까다로운 적합성평가 절차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 협회 - 기업이 적극 협력 필요
 - 일본, EU, 인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국은 자국 환경·안전 명분으로 까다로운 인증 요구하며 자국 철강시장 보호
 - 부당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는 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WTO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철강협회,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 필요

1. 무역규제와 무역기술장벽(TBT)의 개념

- 무역규제에는 수입규제(AD, CVD, SG)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및 위생장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이 있음
- 연간 4,000건 규모의 무역규제 중 절반 정도가 무역기술장벽에 해당

[무역규제 현황]

(건)

년도	수입규제			기술·위생 장벽		기타무역제한 조치			총계
	AD	CVD	SG	TBT	SPS	수출관련	수입관련	기타	
2012	208	23	24	1,676	1,219	22	124	13	3,309
2013	287	33	18	1,763	1,299	31	131	7	3,569
2014	236	45	23	1,616	1,634	25	125	12	3,716
2015	229	31	17	1,590	1,681	44	169	15	3,776
2016	298	34	11	1,833	1,392	21	101	13	3,703
2017*	251	42	8	2,214	1,480	17	78	13	4,103

자료 : WTO, Trade Policy Review Body, Annual Report (2018)

* 2017년 : '16년 10월 중순 ~ '17년 10월 중순

-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임

- WTO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 정당한 목적¹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규제 방지가 WTO의 핵심 역할
- WTO TBT 협정의 주요 원칙
 - 첫째,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차별 원칙(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을 적용
 - 둘째,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준비·채택·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관련된 부분 채택

¹ 정당한 목적은 국가안보, 인간의 보건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을 포함

- 셋째,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 통보하여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을 수렴²

○ 무역기술장벽 유형

- 첫 번째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으로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영상 외국기업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으로 중복적인 검사 요구 및 검사 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적 행정적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
- 세 번째는 라벨링 요건상 장벽으로, 특정 라벨 부착 의무화가 생산 요소의 차별화 발생 요인이 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는 역기술장벽으로 작용

[무역기술장벽의 유형과 내용]

구분	유형	주요 내용
기술규정	차별적 기준 적용	현지 조달비용 계산 시 국내외 업체 간 산정방식 차별 적용
	상이한 표준 적용	국가, 지자체, 공동체 회원국 간 독자적 표준제도 운영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제품 표준 및 인증절차가 국제표준과 불일치
	과다한 기술요건	타 국가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빈번한 기술규정 개정 및 불충분한 사전공시 기간 설정 등
	임의표준	민간기관 중심으로 설정된 자발적 임의표준 적용과 국내시장판매 위한 인증취득에 실질적 강제성 부여
적합성 평가	중복검사	국내 및 국제적 인증 취득 불인정, 중복검사 강요, 인증제도 이원화
	과다시간 소요	인증마크 획득 시 과다시간 소요, 관련 담당자 부족으로 검사 지연
	과다비용 소요	높은 검사 비용, 과다한 표본 조사로 인한 비용 증가,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판정의 일관성 결여(기준의 불분명으로 검사원의 자의적 판단)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라벨링 요건	상표표시부착	국내 조달비용 표시를 요구, 반수입적 자국산 구매 고취, 자국어 표기 의무, 표기를 상품 자체에 하도록 요구

자료 : 이길남 외(2005) 수정

² 의견제시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설치·운영

2.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

□ 무역기술장벽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을 만든 국가가 WTO에 알리는 TBT 통보문 발행수

○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자국의 기술규정, 표준, 인증의 제·개정이 WTO 회원국 무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장벽을 만든 국가가 WTO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건

- 1995년부터 2018년까지 137개 회원국이 WTO에 총 33,563건의 기술규제를 통보
-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통보문 발행 상위 3개국은 미국(3,468건), 브라질(1,727건), EU(1,576건)

[주요국 통보문 발행건수]

(건)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83	55	64
미국	441	295	276
EU	109	100	115
중국	35	59	65

○ 그간 선진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활용해왔던 기술규제가 최근 개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교역환경이 더욱 어려워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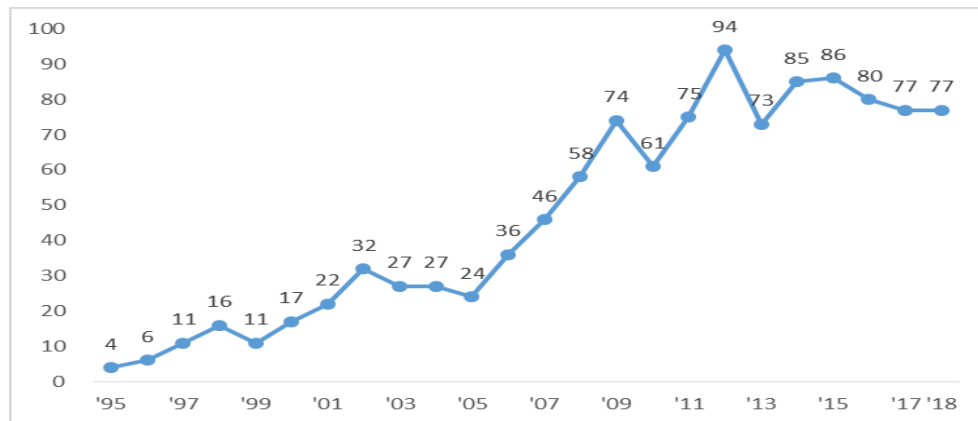
- 2005년부터 개도국의 적극적 기술규제조치 도입 및 WTO TBT 협정 의무 이행으로 통보문 발행수가 증가하였고 2018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
- 2018년 통보문 발행은 선진국 17%, 개도국 83%로 개도국 비중 큼

□ 두 번째 지표는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국가가 연 3회 개최되는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시키는 건수

○ 신규 또는 시행 중인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피해국은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의 제기

- STC 통계자료는 전 세계 무역기술분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STC 이슈 발생 동향(중복 불포함, 건)]



-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한 상위 3개국은 EU(268건), 미국(250건), 캐나다(120건)이며 한국(61건)은 8위
 -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 받은 상위 3개국은 EU(120건), 중국(70건), 미국(51건)이며 한국(33건)은 4위
- 2018년에 우리나라가 제기한 STC는 3개국 13건으로 그 중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 심사방법’, ‘네트워크 안전법’ 등 10건을 중국에 제기
 - 2018년에 우리나라가 제기 받은 STC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6개국,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안’에 7개국

3. WTO 분쟁해결과 대응

- WTO 회원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피제소국과의 협의가 무산되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³
-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같이 국가 대 국가 간 분쟁으로 진행
 - 무역제한조치 피해자는 수출기업이지만 WTO 제소는 국적국 정부만 가능⁴

³ TBT가 WTO 부속협정으로 존재하고 있어 TBT 분쟁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고 있음

⁴ 국가 간 분쟁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제기 및 진행 과정에서는 본질적으로 외교적 고려와 국가 간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 피해를 입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⁵

○ 패널심리와 항소기구심리의 2단계로 진행

-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는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임하는 3인의 패널리스트로 구성되며 법률심과 사실심 모두를 담당
- 2심 법원인 항소기구 7인의 항소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관이며 이중 3인이 특정사건을 담당하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항소기구는 법률심만 담당

□ WTO 분쟁해결 절차 주요 원칙

○ 정부 조치에 적용

-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비정부 기관의 조치는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WTO 법리상 정부 조치의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정부 조치의 존재여부가 주요 분쟁항목이 되고 있음

○ 적용 법규의 한정

- WTO 협정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협정 이외에 여타 국제법 규범이나 국내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배제됨
- 여타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WTO 협정만을 적용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고려가 제한된다는 단점도 존재

○ 입증책임

-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국이 부담하는지 여부가 최종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줌
- 국내법원의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패널이 자유로운 입장에서 제시된 증거자료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하여 최종 결론 도출
-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부과되지만 분쟁 대상이 되는 주요 자료와 증거가 대부분 피제소국 정부의 영역과 권한 내에 속해서 실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피제소국으로 전환되는 경우 발생

○ 승소 판정의 취지

- 피제소국 정부의 문제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를 일정기한 내에 협정 합치적으로 변경해야 함을 의미

⁵ 개인·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 간 합의된 이해관계의 균형 회복이 기본목표

- TBT 분쟁과 관련해서도 패소국은 소정 기한 내 자국의 조치를 TBT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정 내지 변경해야 함

○ 소급적용 불가

- 통상적으로 문제의 조치가 1~2년간 적용되고 이 기간 동안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경우 WTO에 제소됨
- WTO 최종판정까지 2~3년이 소요되고 패소국 이행기간 1년 정도를 추가로 감안하면 4~6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문제 조치가 철폐됨
- 수출기업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협정위반 조치로 파괴된 통상협정상 이해관계 균형을 회복하는 절차

○ 패소국 미이행 시 무역보복을 통한 구제 제공

- 패소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 판정을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국내적으로 이행할 것을 선언해야 함
- 승소국은 WTO DSB의 승인을 통해 미이행 패소국에 대하여 합법적인 무역보복⁶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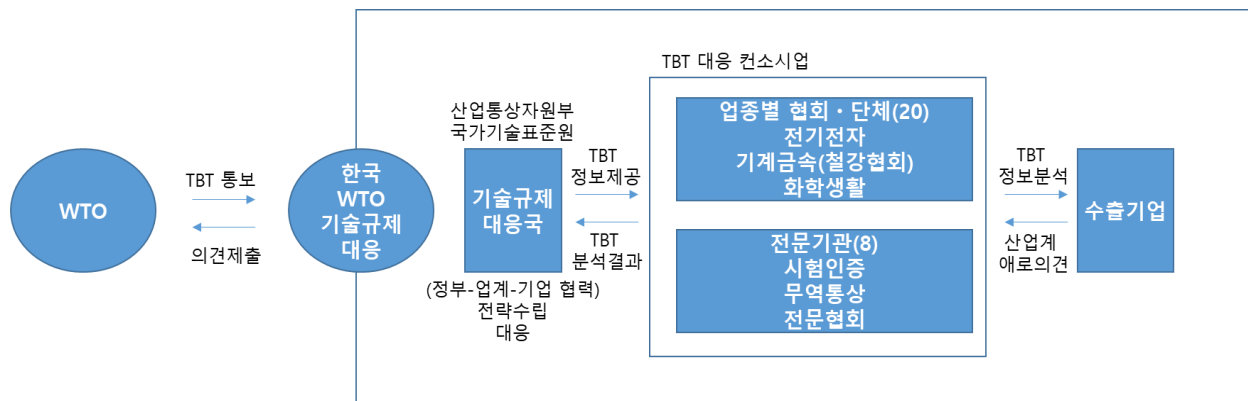
□ 분쟁의 소송주체는 국가이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정보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및 대응단계로 구분

- 정보수집단계에는 WTO TBT 통보, STC 이슈, 기업/업종별 협회/재외공관이 파악하는 해외기술규제를 수집
- 조사분석단계에서는 WTO TBT 규제동향과 영향 등 자료를 업계에 전파
 - 기술규제,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운영
 - 중요 규제에 대해 국내외 규제와의 비교, 피해업계 파악 등 조사
- 전략수립단계에는 규제국가별 대응전략, 업종별 대응전략, 규제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
 - 업계의 대응 요청사항 등을 수렴하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도출
- 대응단계에서는 소송 전 외교적 대응,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시행

⁶ 보복조치는 패소국에서 승소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제한 조치 등을 부과하여 제소국이 피해 입은 금액만큼 교역상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

- 통상 1년에 3차례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 수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외국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과 협의 진행
- 특히 위원회에 참석한 당사국과 양·다자 협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합의 도출, 결렬 시 소송 제기

[무역기술장벽 대응 구도]



자료 :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수정

4. 시사점

- 우리나라는 포화상태의 선진국시장에서 벗어나 개도국시장으로 수출 확장을 추진 중이나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기술규제가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짐
 - 2005년부터 개도국의 적극적인 기술규제조치 도입 및 WTO TBT 협정 의무 이행으로 통보문과 STC 발생에서 개도국이 큰 비중 차지
 - 2018년 신규 STC : 선진국 41%, 개도국+선진국 36%, 개도국 23%
- 철강관련 무역기술장벽의 대표적 예로 인도네시아의 SNI, 인도의 BIS, 일본의 복잡한 인증체계 등 각국의 적합성평가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
 -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증서 발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경제적 부담과 행정부담이 가중되어 기존의 취지⁷가 퇴색되고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 SNI⁸ :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공장 심사 → Sample Test

⁷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으로 특정 규격을 마련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유해 제품의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⁸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 : 연 1회, 품목당 3일가량 소요되는 빈번한 정기 공장심사의 행정

등 제품 심사 → 인증서 발급(소요기간 : 약 6개월)

- 인도 BIS⁹ : 신청 → 검토 → 공장 방문(설비 조사) → Sample Test → 인증서 발급(소요기간 : 약 10개월)

○ 일본에서는 과다시간 및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인증체계가 수출기업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

- 외국업체도 JIS 취득은 용이하나, 건자재의 경우 JIS 대신 건축법에 근거한 지정건축재료 성능평가 요구(지정건축재료는 단체규격으로 지정)
- 건재시험센터에서 1992년부터 단체규격을 제정, 건축분야 재료, 구조재료의 안정성 등 규격 제시

□ 철강은 무역규제 중 특히 수입규제(AD, CVD, SG)가 집중되는 산업이지만, 각국의 표준변경, 인증지연 등 무역기술장벽도 수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기술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 [기술규제 대응] 사전 정보입수, 통보 내용 전파, 미통보 규제 파악 등을 위한 상시적 조직, 민관협력 채널 운영 등 제도적 기반 구축과 더불어 이러한 자원을 동원한 구체적 대응 행동 필요

- A. 일반적으로 6개월인 TBT 의견수렴 기간 내 신규 TBT의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적극 대응
- B. 연간 3회 TBT 위원회 적극 활용 : 특정무역현안(STC) 상정¹⁰과 참가국과 양자 및 다자 간 협의로 철강수출 장벽 제거 노력
- C. 규제국과 협의가 결렬된 경우 WTO에 제소하여 분쟁해결 추진

○ [국제표준 활용]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국내 규제에도 활용

○ [적합성절차 극복] 국제 규제 흐름 파악, 적합성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 부담과 더불어 제반 비용을 모두 인증 신청기업이 부담

⁹ BIS(Bureau of India Standards) : 공장방문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복잡한 제출 서류, 2년 단위의 잦은 인증 갱신 심사 및 매해 실시되는 심사로 기업 부담 가중

¹⁰ 우리나라를 포함 EU, 일본, 중국, 멕시코 등이 2009년과 2012년 철강 강제인증 관련 STC 상정

[참고자료]

[책/보고서/논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 2019.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9 무역기술장벽(TBT) 고위전문가 과정”, 2019

안덕근 · 김민정 등,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박영사, 2018.1

이길남, 윤영한(2005), “WTO의 기술적 무역장벽 및 위생·검역조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제상학」, 제20권 제2호, pp.203~207.

정기대, “EU 철강산업 비관세장벽”, 2019.9

하태정 · 송종국 등,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2011.2

WTO, “Trade Policy Review Body, Annual Report”, 2018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철강협회(www.kosa.or.kr)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언론]

산업일보, “환경 규제 강화, 국가 간 ‘무역장벽’ 됐다”, 2019.7.6

전자신문,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선제 대비 필요”, 2019.9.9

전자신문, “세계 무역기술장벽, 올해도 높다…전기·전자, 에너지 규제↑”, 2019.10.22

한국경제, “점증하는 무역기술 장벽”, 2019.9.5